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및 강제징수 근거 마련〉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33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2.
3. 회부연월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

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납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u>위하여</u> <u>선발 절차를 거쳐</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

현행	개정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사람의 선발·취소, 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 따른 환수 금액 등-----.

□ 단기복무장려금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단기장교 지원율이 감소하자, 우수한 장교 인력 확보 및 금전적 보상 제공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은 2024년 기준 1,200만원임.

□ 현행법 제62조의2, 동 시행령 제60조의32 및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5조1)에 의하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규정은 법률에 규정

- 1)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으나, 반납규정은 국방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미반납시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령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환수 규정을 하위법령(국방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두32992 판례 중 일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한편, 동법 제62조에 의한 가산복무지원금²⁾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아니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이하 생략)

- 2) 가산복무지원금은 우수 인력을 군으로 유인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7년 이내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지급함.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³⁾.

□ 단기복무장려금과 가산복무지원금 반납 통지에 대해 미반납시 보증 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는 양자가 동일하나, 미반납시 강제징수 규정은 가산복무지원금 제도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에도 동일한 반납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단기복무장려금 반납 제도는 2024.12.31.부터 시행⁴⁾되어 반납의무규정이 적용되는 임관자는 아직 임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반납 사례는 없음. 가산복무지원금의 경우 최근 3년간 강제징수를 집행한 사례는 없으나, 지원금 수령 시 당사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보증채무를 이행 청구한 사례는 존재함⁵⁾.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군 장려금 지급 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16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5) 다음 페이지의 각주 표 참조.

□ 따라서, 단기복무장려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를 통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국가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로도 일정 부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① 국방부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침익적 조항을 제정한 위헌적 상황을 사후에라도 치유할 필요가 있고, ②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은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한 지원책으로 환수 규정 및 강제징수 조항에 있어서도 법률에 균형있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③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사가 보증

[가산복무지원금 환수 현황(임관 이전)]

구분	'22년			'23년			'24년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계	144	19	0	246	18	0	304	30	0
육군	79	9	0	147	13	0	176	17	0
해군	30	0	0	23	3	0	37	2	0
공군	20	0	0	26	0	0	20	0	0
해병대	15	10	0	50	2	0	71	11	0

[가산복무지원금 환수 현황(임관 이후)]

구분	'22년			'23년			'24년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개인 반납	보증 보험	강제 징수
계	7	1	0	18	1	0	10	2	0
육군	2	0	0	15	0	0	10	2	0
해군	2	1	0	2	0	0	0	0	0
공군	2	0	0	1	0	0	0	0	0
해병대	1	0	0	0	1	0	0	0	0

자료: 국방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 내용에 있어 안 제62조의2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발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는 이미 선발된 자에 대해 다시 별도의 장려금 지급 대상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발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4항의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이라는 문구 역시 마찬가지로 불필요해 보이므로 아래와 같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u>위하여 선발</u> <u>절차를 거쳐</u> ----- ----- ----- ----- -----.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② ~ ③ (생략)</u> <u>④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u> <u>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u> <u>따른 환수 금액 등</u> -----.	1. ~ 3. (현행과 같음) <u>② ~ ③ (개정안과 같음)</u> <u>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범위</u> <u>· 방법, 제2항에 따른 장려금 반납</u> <u>및 환수 금액 등</u> -----.

- 국방부는 군 장려금 환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강제징수 조항의 명시를 통해 환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개정안 제62조의2제1항의 “선발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0